

2026년

자살예방교육 안내서

목 차

I. 자살예방교육 개요 / 3

1. 자살예방교육 개요	5
2. 주요 용어 정의	7

II. 추진개요 / 9

1. 추진개요	11
2. 교육대상	13
3. 교육내용 및 승인교육	14
4. 교육방법	17
5. 교육실행	20
6. 결과보고	25

III. 대상별 세부교육 안내 / 27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27
2.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	31
3. 초·중·고등학교	37

IV. 부록 / 41

〈FAQ〉 자주 묻는 질문	43
〈참고1〉 승인교육 프로그램 목록	47
〈참고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58

I

자살예방교육 개요

2026년 자살예방교육 안내서

1 교육목적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자살 위험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교육

자살예방법 제17조

- ▶ ①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교육대상 [법률 제17조, 시행령 제10조]

- 교육 의무·노력대상 기관(단체)장 및 모든 근로자, 학생

- 의무대상: 국가 및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초·중·고등학교, 병원급 의료기관

구분	대상
국가 및 공공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초·중·고등학교)
의료기관	☐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 노력대상: 대학교, 대안교육기관, 민간사업장

구분	대상
학교 등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대학교)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사업장	☐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3 교육내용 및 실시횟수 [시행령 제10조의2]

- 생명에 대한 건전한 가치함양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 주변의 고위험군을 발견하여 전문기관으로 연계해주는 ‘생명지킴이 교육’ 중 선택하여 승인된 교육으로 연 1회 이상 실시(☞ 안내서 p.14 참고)

4 교육방법 및 기간 [시행령 제10조의2]

-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

5 교육 결과보고 [시행령 제10조의2]

- 교육실시 기관은 2027년 1월 31일까지 자살예방교육 누리집 통해 제출(입력)
(단,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결과보고 제출 생략 가능)

★ 교육수강 및 결과보고는 자살예방교육 누리집(edu.kfsp.or.kr)을 통해 가능

〈주요 용어 정의〉

이 안내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음

- ‘자살예방교육’이라 함은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생명존중에 대한 건전한 가치함양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과 주변 고위험군을 발견하여 전문기관으로 연계를 돕는 ‘생명지킴이 교육’을 말함
- ‘자살예방교육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함은 자살예방교육의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재단의 위원회를 말함
- ‘자살예방 승인교육 프로그램’(이하‘승인교육’)이라 함은 공공 및 민간기관 등에서 개발한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승인받은 교육을 말하며, 승인교육에 한해 교육이수를 인정받을 수 있음
- ‘자살예방교육 수행기관’(이하‘수행기관’)이라 함은 승인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유한 기관으로 보급(교육 운영)이 가능한 기관을 말함
- ‘자살예방교육 실시기관’(이하‘교육기관’)이라 함은 법 제17조에 정의한 교육 의무 및 노력 대상 기관을 말함
- ‘전문 또는 사내강사’ 라 함은 재단의 전문 또는 사내 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한 강사를 말함
- ‘승인교육 강사’라 함은 재단 외, 수행기관에서 양성된 자살예방교육 강사를 말함
- ‘자살예방교육 누리집 (edu.kfsp.or.kr)’을 이하 ‘교육 누리집’으로 함

II

추진 개요

1 추진개요

1) 사업목적 및 근거

- 전 국민 대상 자살예방교육을 통해 생명에 대한 건전한 가치함양 및 지역사회 내 촘촘한 인적 발굴망을 구축하여 '자살위험 없는 안전한 공동체 구현'

《추진 근거》

-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7조(자살예방 상담·교육)
- ▶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 '1-2-1-1 생명존중인식 교육 의무화 및 체계 마련'

2) 추진경과

- 2013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 및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강사양성과정 운영
- 2018년 「자살예방국가행동계획('18-'22)」 시행 및 전 국민 대상 생명지킴이 양성사업 추진
- 2023년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3-'27)」 시행 및 자살예방교육 의무화 추진, 자살예방교육 의무화 내용을 담은「자살예방법」 개정('23.7.11. 공포, '24.7.12. 시행)
- 2024년 자살예방교육 안내서 발간, 자살예방교육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2025년 자살예방교육 안내서 개정
- 2026년 자살예방교육 안내서 개정

3) 추진체계

자살예방법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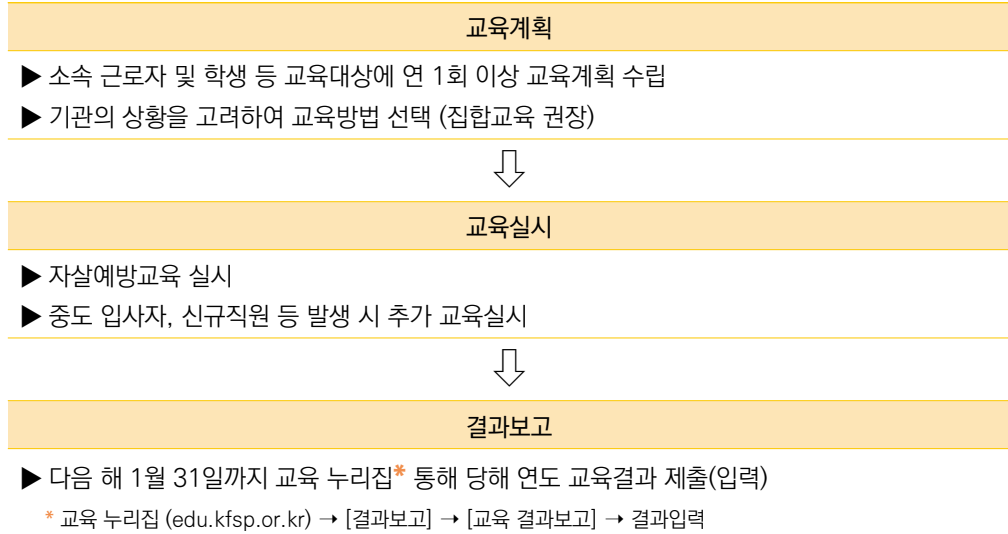
《자살예방 상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②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및 시설에 제1항에 따른 상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의4에 따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자살예방 상담·교육에 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 및 시설

〈자살예방교육 주체별 역할〉

구분		역할
주관기관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 교육 제도 마련 및 사업 방향 수립 • 결과보고 취합 및 점검
수행기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자살예방교육부)	•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원 • 전문·사내강사 양성 및 관리 • 교육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교육 프로그램 승인심사 및 관리 • 교육 누리집 관리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기타 승인교육 프로그램 개발·보유기관	• 승인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자살예방교육 실시 • 승인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 양성·관리 • 승인교육 프로그램 운영 보고
대상기관	의무대상 기관	• 매해 자살예방교육 실시 및 결과보고
	노력대상 기관	• 자율적으로 자살예방교육 실시 노력

4) 교육운영 절차



2 교육대상

기관 내 직군(직급) 및 내·외국인 등 관계없이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

〈근로자 기준〉 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한 사업주(기관장) 및 근로자*

*단, 자원봉사자 또는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 제외

○ 의무대상: 매해 교육실시 및 결과보고 필수 대상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

- 중앙행정기관·입법·사법기관·국방·경찰·소방 등
- 광역·기초 등 자치행정기관, 교육청 행정기관
- 「공공기관 운영법」,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공기관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법률 제17조제1항제2호, 제3호)

-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③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

- 초등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학교 내 학생 및 교직원)

④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시행령 제10조제2항)

○ 노력대상: 교육 권고 대상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법률 제17조제2항)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②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호)

③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시행령 제10조제3항제2호)

〈기관 내 교육 대상 인원 산정 기준〉

○ 직군(직급) 및 내·외국인 등 관계없이 대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

* 근로자 산정 기준: 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한 근로자 (단, 자원봉사자 또는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이거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 제외)

* 산정 시점: 당해연도 12월 31일 기준 근로하고 있는 인원

3 교육내용 및 승인교육

○ 승인교육* 중 적합한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연 1회 이상 교육 실시

* 공공·민간기관이 개발한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중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승인받은 교육

- 승인교육 프로그램은 교육 누리집(edu.kfsp.or.kr)을 통해 확인 가능

* '26년 1월 기준, 인식개선 48종, 생명지킴이 104종 등 총 152종 [참고1]

〈대상별 권장교육 프로그램〉

교육대상		교육 프로그램명	교육시간(집합교육기준)
학생		- 아동 청소년 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프로그램 -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양성 프로그램 보고듣고말하기 2.0 (중학생용, 고등학생용)	40분~50분
성인 (직장인)	일반직군	- 전국민 자살예방 인식개선교육 프로그램(성인용) -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양성 프로그램 보고듣고말하기 2.0 (기본형)	60분~120분
	사회복지	보건복지종사자 대상 자살예방교육	90분
	의료분야	의료기관 보건의료인력 대상 자살예방 교육 (의사용, 간호사용)	90분

자살예방법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

▶ ①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살예방 교육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자살예방 인식개선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
 - 자기 이해와 돌봄, 도움 요청에 관한 내용
 - 그 밖에 생명존중에 대한 건전한 가치함양에 필요한 내용
- 생명지킴이 교육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 자살문제와 현황
 - 자살위험요인과 자살경고신호
 - 자살위기 대응 기술
 - 그 밖에 자살위기 방지 및 대응에 필요한 내용

〈자살예방교육의 종류〉

구분	인식개선 교육	생명지킴이 교육
교육 목표	자신의 심리적, 정신적 안녕과 공동체 안전 확보	자살위기자를 미리 발견하고 대응하는 방법
교육 내용	①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 - 자신과 타인의 가치 인식 ② 심리사회적 문제와 도움요청 - 당면하기 쉬운 심리사회적 문제 - 정신과적 문제인식과 적절한 도움요청 방법 ③ 자기이해와 돌봄 - 다양한 감정 다루기 - 스트레스 관리 및 심신건강 증진방법	① 자살문제와 현황 ② 자살위험요인, 경고신호 ③ 자살위기 대응기술 - 자살위기자 식별과 지원 - 자살위기와 대화 방법 - 적절한 전문가 및 자원 연결 - 후속 관리 등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승인심사 제도

○ 승인심사 개요

- (신청자격) 공공 및 민간기관(단체)으로 의무·노력 대상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 기관
- (심사기준) 교육내용, 과정개발, 교육운영, 종합평가 4개 분야 심사
- (심사절차) 교육 누리집(edu.kfsp.or.kr) 통해 공고

구분	주요 내용
모집공고	■ 매해 상·하반기 2회 진행
서류접수	■ 사업참여 희망기관 서류 제출 (기관 → 재단) - (제출서류) 공문, 심사신청서, 서약서, 교육 프로그램 교안 등
서류검토	■ 제출 서류의 적격여부 검토 (재단 → 기관)
심사진행	■ 자살예방교육 승인심사 ■ 자살예방교육 운영위원회 승인심사
결과통보	■ 심사 결과통보 (재단→기관)
교육운영	■ 신청서에 준하여 교육 실시
사업평가	■ 연말 운영보고서 제출 (기관 → 재단) - 운영위원회 평가를 통해 연장 또는 해지 가능

4 교육방법

○ 집합교육을 권장하며, 기관별 상황을 고려하여 교육 실시

자살예방법 시행령 제10조의2제3항

- ▶ ③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살예방 교육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I 교육방법 및 유형 I

집합교육 >

대면교육

(외부) 자살예방교육 전문강사 섭외
(내부) 사내강사 교육
* 대면에 준하는 실시간 비대면 교육 포함

시청각교육 >

교육용 영상
(시청각자료)
시청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교육 담당자가 교육 진행

인터넷교육 >

교육 누리집
온라인교육
사내 온라인교육

(누리집) '교육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개별 교육
(사내) 교육자료 다운로드 후 자체 LMS*운영
(시스템 보유 기관에 한함)
* LMS: Learning Management system

1 집합교육(대면교육)

① (외부) 강사섭외

- (교육방법) 교육 누리집(edu.kfsp.or.kr) '전문강사 찾기*' 통해 강사를 직접 섭외하거나, 승인교육 보유기관[참고1] 또는 지역별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에 강의 의뢰

* (전문강사 찾기) 해당 페이지는 교육 누리집(edu.kfsp.or.kr)에서 기관회원 로그인 후 접근 가능

② (내부) 사내강사

- (교육주체) 사내 직원 중 재단의 '사내강사 양성과정*' 수료자
- (교육내용) 복지부(재단)에서 승인한 인식개선 교육에 한해 가능

* (사내강사 양성과정) 강사양성과정 운영 개요 및 모집 일정 등 교육 누리집(edu.kfsp.or.kr) 참고

2 시청각교육

- (교육주체) 기관(단체)장 또는 교육 담당자
- (교육내용) 복지부(재단)에서 승인한 인식개선 교육에 한해 가능
- (교육방법) 교육 담당자가 교육 누리집(edu.kfsp.or.kr)을 통해 교육자료* 다운로드 후 교육 지침서에 준하여 직접 진행

* 교육자료 종류: 시청각교육 자료(교육영상+활용 지침서)

3 인터넷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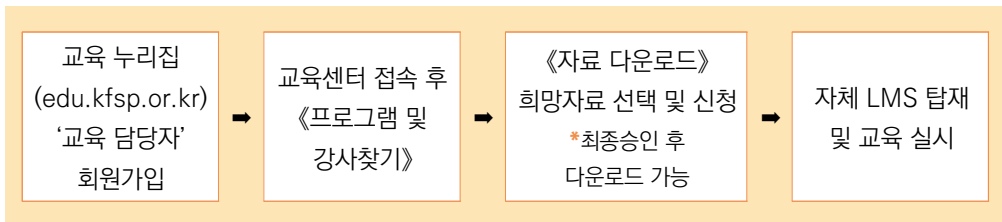
○ 교육 누리집

- (활용대상) 조직 내 온라인 학습 관리 시스템(LMS)이 없는 기관
- (교육방법) 교육 누리집(edu.kfsp.or.kr)을 활용하여 근로자가 개별학습 진행

○ 사내 별도 시스템

- (활용대상) 조직 내 온라인 학습 관리 시스템(LMS)이 있는 기관
- (교육방법) 조직 내(사내) 자체 온라인 학습 관리 시스템(LMS) 활용
- (교육자료) 교육 누리집(edu.kfsp.or.kr)에서 교육자료 다운로드 후 자체 LMS에 탑재하여 교육 실시

〈교육자료 다운로드 경로〉



5 교육실행

〈교육 누리집〉

인터넷 검색창 [자살예방교육] 검색 또는 주소 edu.kfsp.or.kr 입력

| (교육 담당자) 대면교육 개설 |

교육 누리집을 통해 기관의 교육계획에 따른 자살예방교육 전문강사 검색 가능

○ 자살예방교육 전문강사 찾기



교육개설

교육담당자 메뉴 열기

기관명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기관주소	서울 중구 을지로 6	지역	서울
담당자명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이메일			
강사선택	☒ 강사선택 ☐ 강사섭외필요 지역 강사명 검색		
교육명	교육을 선택해 주세요.		
교육대상/상세	대상을 선택해 주세요. 교육대상 상세		
교육일시	2026-01-12 00 시 00 분 ~ 00 시 00 분		
교육인원	명 *참조년 50명, 그 외 200명 신청 시 초과신청 불가 (비대면교육은 해당없음)		
교육장소	☐ 비대면 교육(홈, 방송실 등 실시간 강사 교육 시) ☒ 주소입력 우편번호 주소검색		

신청하기 목록

교육 누리집 > 기관회원 로그인 > 교육개설 > 대면교육

- 강사 섭외가 필요한 경우, '강사섭외필요' 클릭 후 강사 요건과 강의비 정보를 입력

| (학습자) 온라인교육 활용 |

○ 일반(개인) 온라인교육 수강



The screenshot shows the '온라인교육신청' (Online Education Application) page. At the top, there's a navigation bar with links like '교육안내', '온라인교육', '대면교육', '나의 교육', and '계시판'. Below the navigation bar, the page title is '온라인교육신청'. There's a search bar with the placeholder text '찾고 있는 과정명 혹은 기관명을 입력해 주세요.' and a '상세검색 ^' button. Below the search bar, there are tabs for '교육분류' (Education Category) with '일반' (General) selected, and '교육상태' (Education Status) with '전체' (All), '신청대기' (Waiting for application), '신청중' (Applying), and '신청마감' (Application closed). There are also buttons for '초기화' (Reset) and '검색' (Search). Below these, it says '총 16건 (1 / 2 페이지)' (Total 16 items (1 / 2 pages)). There's a '신청기간순' (By application period) dropdown set to '10개씩 보기' (View 10 at a time) and a '확인' (Check) button. The main content area shows a list of education programs. The first item is '[2026년] 보고듣고말하기 2.0 기본편' (2026 [Report, Listen, and Talk] 2.0 Basic Edition). It has a thumbnail image, a title, and details: '학습기간 2026-01-01 ~ 2026-12-31' (Learning period 2026-01-01 ~ 2026-12-31) and '신청기간 2026-01-01 ~ 2026-12-31' (Application period 2026-01-01 ~ 2026-12-31). To the right of the item, there's a '신청하기' (Apply) button highlighted with a red box, and a '상세보기' (View details) button below it.

교육 누리집 > 학습자 로그인 > 온라인교육
 - 온라인교육 목록을 조회하여 수강하고자 하는 과정의 교육 신청하기

○ 기관 소속 개인 온라인교육 수강(교육 링크접속)



기관 코드 입력

기관에서 전달받은 코드를 입력해주세요.

확인

교육내용*

- 1) 보기
 - 자살 생각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 2) 듣기
 - 자살의 신호를 발견한 후 실제 자
 - 3) 말하기
 - 자살위험자의 생각과 관점을 존중

학습목표*

 - 1) 국내 자살현황 및 상태, 자살의 위
 - 2) 전 국민 대상의 자살예방 생명지킴
 - 3) 다양한 하위 모듈 계층별 특화 생

학습목차

1주차 : [2026년] 보고듣고말하기 2.0 기본편

 - 1차시 . 보고듣고말하기 2.0 기본편 1차시
 - 2차시 . 보고듣고말하기 2.0 기본편 2차시
 - 3차시 . 보고듣고말하기 2.0 기본편 3차시
 - 4차시 . 2026년 자살예방 온라인교육 과정 만족도 평가(생명지킴이)

자살예방 생명지킴이교육 보고듣고말하기 (ver. 2.0 기본편)

신청기간 2026-01-01 ~ 2026-12-31
 학습기간 2026-01-01 ~ 2026-12-31
 교육시간 2 시간 0 분
 교육방법 온라인

신청하기

전달받은 링크를 통해 교육 누리집 접속 > 신청하기 > 기관코드 4자리 입력 > 교육 수강

| (학습자) 수료증 관리 |

수료증은 개별 관리 할 수 있으며 ‘나의교육’에서 소속 정보 입력 후 발급 가능

○ 수료증 발급

수강현황

0

학습 중

0

수강대기

1

수강완료

0

시험

0

과제

1

설문

공지사항

다보기

공지사항이 없습니다.

수강과정

온라인

학습 중

수강대기

수강완료

취소완료

분류	과정명	학습기간	강의실	강의계획서	점수	성적	수료증
일반	[2026년] 전국민(성인) 대상 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	2026-01-13 ~ 2026-02-12	복습하기	강의계획서	100	상세	발급

교육 누리집 > 나의 교육 > 수료증 발급

6 결과보고

2026년(1월~12월) 교육 실시 후 2027년 1월 31일까지
교육 누리집(edu.kfsp.or.kr)을 통해 결과보고 필수 제출

자살예방법 제17조제1항

-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자살예방 교육의 실시 결과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시행령 제10조의2제4항, 제5항

- ▶ ④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자살예방 교육의 실시 결과를 제출하려는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⑤ 제4항에 따라 교육 결과를 제출받은 주무부처의 장은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 (보고대상) 교육대상 기관 및 단체의 장 또는 교육 담당자 ※ 의무대상 기관 결과보고 필수

○ (보고시기) 2027년 1월 31일까지

○ (보고방법) 교육 누리집의 결과보고*에 입력

* 교육 누리집 (edu.kfsp.or.kr) > 교육 담당자(기관회원) 로그인 > [결과보고] > [교육 결과보고] > 결과입력

○ (보고내용) 교육결과(교육일시, 교육명, 교육방법, 수료인원, 대상인원 등) 입력

※ 국가기관(소방, 경찰 포함), 지자체, 교육행정조직(교육(지원)청 및 산하기관)의 경우, 중앙(본부)에서 일괄취합 후 결과보고

III

대상별 세부교육 안내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대상 지살예방교육 안내

소속 공무원 및 모든 근로자(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한 근로자) 대상 교육
매년 1회 교육 실시 후,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1 법적근거 및 세부 교육대상

- 「자살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 시행령 제10조제1항
- 직군(직급) 관계없이 모든 공무원 및 근로자(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한 근로자)

〈상세 교육대상〉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 입법·사법·헌법조직 및 중앙행정기관(부·처·청) 등
 - ☞ 「정부조직법」, 「국회법」, 「법원조직법」에 따른 조직
 - * 정부24) 정부/지자체 조직도 참고
- 광역·기초 등 자치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 기준
- 교육행정조직 (시·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 ☞ 교육부 「지방교육자치」 기준
- 국군(병사를 제외한 간부급 장교, 부사관, 군무원)
 - ☞ 「국군조직법」에 따른 각군 본부 및 각군 부대와 기관
- 경찰 및 소방
 - ☞ 경찰청·소방청 통계연보에 따른 각 기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 공공기관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 * 당해연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알리오 지정기관 기준
-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 및 제7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설립현황 기준

2 교육 프로그램

○ 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 또는 생명지킴이 교육 중 택 1

〈권장교육 프로그램〉

구분	권장교육 프로그램명	교육시간(집합교육기준)
인식개선 교육	전국민 자살예방 인식개선교육 프로그램(성인용)	60분
생명지킴이 교육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양성 프로그램 보고듣고말하기 2.0 기본형	120분

○ 집합교육을 권장하며, 기관별 상황을 고려하여 교육 실시

- 강사 대면교육 및 시청각교육 등 실시 (☞ 안내서 p.17 참고)

〈온라인교육〉

대상	기관명(사이트명)	수강과목
누구나	교육 누리집 (edu.kfsp.or.kr)	희망과목 선택수강
공무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나라배움터	지정과목 수강 (자살예방교육 검색)
	경기도 인재개발원 (경기도 공무원에 한함)	
교사	중앙교육연수원	

☞ 전체 교육 프로그램 목록 [참고1] 참고

3 결과보고 방법

○ (국가기관, 지자체) 중앙·본부 취합 후 교육결과 통합입력

○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각 기관별 교육결과 직접입력

III

대상별 세부교육 안내

2.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 대상 시설예방교육 안내

사회복지시설 및 병원급 의료기관 내 모든 사업주와 종사자(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는
매년 1회 교육 실시 후,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1 법적근거 및 세부 교육대상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법 제17조제1항제2호, 제3호)

- 보건복지부 「2026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름

〈「2026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종류〉

기준	시설종류	세부종류		관련 법
		생활시설	이용시설	
보건 복지부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복지법」*
	복합노인 복지시설	농어촌 지역에 한해 「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 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배치한 복합노인복지시설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지원담당기관 지역아동센터 협동돌봄센터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단기 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피해장애인쉼터 피해장애아동쉼터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생산물판매시설 지역보조기기센터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 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이용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기준	시설종류	세부종류		관련 법
		생활시설	이용시설	
	노숙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진료시설 쫓방상담소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관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업법」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다함께돌봄센터		다함께돌봄센터 (학교돌봄터 포함)	「아동복지법」
	청년미래센터		청년미래센터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기부식품등 지원센터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질병 관리청	결핵·한센시설	결핵·한센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성평등 가족부	성매매피해 지원시설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지원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자활지원센터 성매매피해상담소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피해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지역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 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가정폭력상담소 긴급전화센터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출산지원시설 양육지원시설 생활지원시설 일시지원시설	한부모가족복지 상담소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법」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기본법」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복지 지원법」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지원시설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교육부	어린이집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기관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p.44 FAQ 참고)

(2) 기타 자살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법 제17조제4항, 시행령 제10조제4항)

1.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돌봄사업 종사자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 및 같은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통합사례관리사**
3.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종사자**
4. 「치매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종사자**

(3)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법 제17조제1항, 시행령 제10조제2항)

－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의료법 제3조)

2 교육 프로그램

○ 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 또는 생명지킴이 교육 중 택 1

〈권장교육 프로그램〉

대상	구분	권장교육 프로그램명	교육시간(집합교육기준)
사회복지	생명지킴이 교육	보건복지종사자 대상 자살예방교육(기본편)	60분
의료분야	생명지킴이 교육	의료기관 보건의료인력 대상 자살예방교육(의사용, 간호사용)	90분

○ 집합교육을 권장하며, 기관별 상황 고려하여 교육실시

- 교육 누리집(edu.kfsp.or.kr) 통해 온라인교육 수강 가능
- 집합교육 및 시청각교육 등 세부방법 안내서  p.17 참고
-  수행기관 및 교육 프로그램 목록 [참고1]

3 결과보고 방법

○ (제출방법) 기관별 보고

- 각 기관별 모든 소속 직원의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 누리집 내 입력

III

대상별 세부교육 안내

3. 초·중·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 대상 자살예방교육 안내

※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학교(학생, 교원 및 교직원)의 경우,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지침 및 안내에 준하여 실시

학교장은 학생 및 모든 근로자(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한 근로자) 대상 매해 1회 교육 실시 (결과보고 생략가능)

1 법적근거 및 교육대상

○ 「자살예방법」 제17조제1항제4호

- ◇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학교
 -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 ▶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 ▶ 특수학교, 각종학교(외국인학교 등)

2 교육실행 절차

1 교육계획 수립하기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연간 학생 자살예방교육을 위한 계획을 수립 및 추진
 - 학생자살예방대책 시행계획 등 교육부 지침에 따른 생명존중교육(연간 6차시) 연계하여 추진

-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따라, **‘3.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교육’ > 7.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교과 교육 등을 이용하여 학생 자살예방교육 실시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 각 시·도 교육청별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에 따라 생명존중교육 계획 수립 및 추진

- ▶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부의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교육감은 매년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학교장은 ‘학교계획’을 수립·시행

2 교육방법 결정하기

- 학교장은 교육계획에 따라 「자살예방법 시행령」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방법 자율적으로 운영

▶ 학교 상황을 고려하여 교사 또는 외부 강사에 의한 대면교육 권장

▶ 학급단위별 수업 실시 권고

※ 단순 카드뉴스, 가정통신문 등 배포·게시의 경우 교육 불인정

(1) 교사에 의한 시청각교육

※ 시청각교육은 인식개선 교육을 권장

- 시청각 교육자료 다운로드 후 학급별 교육
- ‘교사용 지도서’ 준하여 교육 진행

〈권장교육 프로그램〉

구분	권장교육 프로그램명	교육시간 (집합교육기준)
인식개선	아동 청소년 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프로그램(초등저학년용, 고학년용)	40분
시청각 교육자료	아동 청소년 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프로그램(중학생용)	45분
	아동 청소년 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프로그램(고등학생용)	50분

(2) 외부 강사에 의한 집합교육

※ 교육 누리집 통해 ‘강사찾기’ 가능

- 수행기관 및 교육 프로그램 목록 확인 후 직접 강사 섭외 [참고1]

☞ 세부 교육방법 안내서 p.17 참고

3 결과보고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결과보고 생략 가능

IV

부록

FAQ 자주 묻는 질문

1 교육대상

Q 자살예방교육의 의무대상은 누구인가요?

A 「자살예방법」제17조1항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 ②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치매안심센터 포함)
- ③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④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등

Q 자살예방교육의 노력대상은 누구인가요?

A 「자살예방법」제17조제2항과 「자살예방법 시행령」제10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 ①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대학교)
- ②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인 사업장
- ③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

Q 노력대상은 의무대상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노력대상 기관(단체)도 교육 대상이며, 이수 후 결과보고는 선택사항입니다.

Q 자살예방교육의 대상자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직군(직급), 내·외국인 등 관계없이 법률에서 정하는 기관·단체의 근로계약(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한 경우)을 체결한 모든 근로자(종사자)가 대상입니다.

Q 사업주와 임원, 기초단체장(선출직 공무원) 등도 교육대상인가요?

A 사업주는 물론 임원 등 관리자, 선출직 공무원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Q 파견근로자에 대한 교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A**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교육 시행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사업주가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자살예방법 제17조제1항제3호 따른 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시설은 어떤 곳인가요?

- A**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은 의무교육 대상에 해당하며,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에 따릅니다. ☞ p.33~34 참고
- 또한 사회복지시설로 구분되지 않지만, 시행령 제10조제4항의 사회복지 관련 기관(종사자)도 의무교육 대상입니다.

- 홀로 사는 노인에게 대한 돌봄사업 종사자(「노인복지법」 제27조의2제1항)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 통합사례관리사(「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제1항 및 제42조의2제2항)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종사자(「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
- 치매안심센터의 종사자(「치매관리법」 제17조제1항)

※ 단, 사회복지법인인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지만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일 경우, 교육 노력대상에 해당합니다.

Q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규정이 있나요?

- A** 자살예방교육 미이행 시 법적 제재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살예방법」 제17조에 따라 각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예방교육 실시 및 결과보고를 해야 합니다.

Q 장기요양기관도 교육 의무대상인가요?

- A** 기관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시설급여제공기관'과 '재가급여제공기관'은 노인복지시설로 교육 의무 대상입니다. 다만, 「장기요양법」에 적용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교육방법

Q 자살예방교육 수료를 인정받기 위해 어떤 교육을 들어야 하나요?

A '승인교육'에 한해 인정됩니다. 승인교육 프로그램 목록은 교육 누리집 및 안내서 [참고1]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교육 누리집 접속 > [게시판] > [공지사항] > "자살예방교육 의무화에 따른 승인교육 프로그램 목록 안내"

Q 교육 누리집 외에도 온라인교육 수강이 가능한가요?

A 온라인 콘텐츠 공동활용 기관에서 수강 가능합니다. [☞ 교육 누리집 공지사항 참고](#)
또한, 조직(기관) 내 온라인 학습 관리 시스템(LMS)이 구축되었을 경우, 승인교육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자체 온라인교육이 가능합니다.

* 교육 누리집 접속 > [교육담당자회원] 로그인 > 프로그램 및 강사찾기 > 자료 다운로드

Q 교육 누리집 교육센터에서 어떤 교육을 이수해야 해야하나요?

A 직군·직급·대상별 필수 이수 프로그램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또한 자살예방교육 안내서 내 명시된 교육대상별 권장교육을 수강할 수도 있습니다.

Q 수료증 출력은 어디서 하나요?

A 수료증은 개별 관리 할 수 있으며, 교육 100% 수강 후 설문까지 완료하면 출력할 수 있습니다.

* 교육 누리집 접속 > [학습자회원] 로그인 > [나의 교육] > 수료증 발급

3 결과보고

※ 자세한 결과보고 FAQ는 교육 누리집(edu.kfsp.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자살예방교육 이수 후 결과를 꼭 보고해야 하나요?

A 자살예방법 제17조*에 따라 ‘의무 교육 대상 기관’은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 기관 · 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Q 교육 결과보고는 언제, 어디에 보고하면 되나요?

A 자살예방교육 실시 결과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교육 누리집(edu.kfsp.or.kr)에 입력하면 됩니다.

* 교육 누리집 접속 > [결과보고] > [교육 결과보고] > 결과입력

Q 결과보고 시 인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당해연도 12월 31일 기준, 조직(기관) 내 고용보험 등 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한 모든 근로자(대상인원) 중 수료인원을 작성하면 됩니다.

또한, 기관이 교육실시 이후에 신규직원 발생했다면, 신규자 대상 교육을 추가로 진행해야 합니다.

* 휴직자는 교육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온라인교육 등 개별적으로 교육을 수료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Q 결과보고 시 어떤 정보가 필요한가요?

A 결과보고를 제출할 때 첨부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교육 누리집 내 결과보고 페이지에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 대상인원, 실시인원 등 교육결과를 입력하면 됩니다.

4 강사 관련

Q 교육 누리집에 있는 강사 외 다른 자살예방교육 강사에게 교육을 수강할 수 있나요?

A 강사를 섭외하기 전 승인된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한 강사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미인정 강사 및 교육 프로그램에 의한 교육은 「자살예방법」에 의한 자살예방교육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참고1 승인교육 프로그램 목록

◇ 승인교육 프로그램은 교육 누리집(edu.kfsp.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6년 1월 기준, 인식개선 48종, 생명지킴이 104종 등 총 152종 교육

◇ 승인교육에 한해 법령상 자살예방교육 이수로 인정되며, 아래 기관 외에도 전국 광역·기초자살예방 센터를 통해 교육수강에 대한 문의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 보건복지부(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프로그램 현황

- 인식개선 교육

No	교육대상	교육명	기관명	교육시간
1	초등	아동 청소년 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프로그램 (초등저학년용)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40분
2		아동 청소년 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프로그램 (초등고학년용)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45분
3	중학생	아동 청소년 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프로그램 (중학생용)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45분
4	고등학생	아동 청소년 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프로그램 (고등학생용)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50분
5	청년	청년 대상 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60분
6	보건복지 종사자	정신장애인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실무자용)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90분
7	성인	전국민 자살예방 인식개선교육 프로그램 (성인용)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60분
8		전국민 자살예방 인식개선교육 프로그램 온라인교육(성인용)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60분

- 생명지킴이 교육

No	교육대상	교육명	기관명	교육시간
1	중학생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양성 프로그램 보고듣고말하기 2.0 (중학생용)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45분
2	고등학생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양성 프로그램 보고듣고말하기 2.0 (고등학생용)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45분
3	중학생, 고등학생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교육 프로그램 이어줌인 (청소년용)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50분
4	성인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교육 프로그램 이어줌인 (대학생용)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60분
5	청년, 중장년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교육 프로그램 이어줌인 (성인용)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120분
6	노인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교육 프로그램 이어줌인 (노인용)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60분
7	직장인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교육 프로그램 이어줌인 (직장인용)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60분
8	성인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양성 프로그램 보고듣고말하기 2.0 (기본형)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120분
9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양성 프로그램 보고듣고말하기 2.0 (단축형_청년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60분
10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양성 프로그램 보고듣고말하기 2.0 (단축형_중장년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60분
11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양성 프로그램 보고듣고말하기 2.0 (단축형_노인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60분
12	보건복지 종사자	의료기관 보건의료인력 대상 자살예방교육 (의사용)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90분
13		의료기관 보건의료인력 대상 자살예방교육 (간호사용)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90분
14		장애인 관련 종사자를 위한 자살예방교육 (장애인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90분
15		장애인 관련 종사자를 위한 자살예방교육 (장애인가족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90분

No	교육대상	교육명	기관명	교육시간
16		응급의료종사자 대상 자살관련 교육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120분
17		알코올사용장애 대상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실무자용)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90분
18		보건복지종사자 대상 자살예방교육 (기본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120분
19		보건복지종사자 대상 자살예방교육 (기본편) 온라인교육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60분
20		보건복지종사자 대상 자살예방교육 (심화편_청소년)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180분
21		보건복지종사자 대상 자살예방교육 (심화편_청소년) 온라인교육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110분
22		보건복지종사자 대상 자살예방교육 (심화편_성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180분
23		보건복지종사자 대상 자살예방교육 (심화편_성인) 온라인교육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130분
24		보건복지종사자 대상 자살예방교육 (심화편_노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180분
25		보건복지종사자 대상 자살예방교육 (심화편_노인) 온라인교육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90분
26	19세 이상 외국인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양성 프로그램 '보고듣고말하기 2.0' 기본편 영문판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120분
27	19~34세 외국인 청년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양성 프로그램 '보고듣고말하기 2.0' 청년편 영문판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60분

공공 및 민간기관(단체) 승인교육 현황

※ 교육 및 강의 문의는 각 기관에 직접 문의

- 인식개선 교육

No	교육대상	교육명	기관명	교육시간
1	초등	인천광역시 초등학교 자살예방 프로그램 ‘마음을 봄, 생명을 봄’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 032-468-9917	40분
2		나.비효과(나와 너로부터 비롯된 효과) 초등학교 저학년 ver.	완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 ☎ 063-262-3066	40분
3		나.비효과(나와 너로부터 비롯된 효과) 초등학교 고학년 ver.		40분
4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생명존중 인식개선 교육 「사랑이 쑥쑥」(대면교육)	대구광역시자살예방센터 ☎ 053-256-0199	40분
5		초등학교(저학년) 생명존중 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 「사랑이 쑥쑥」(시청각교육)		15분
6		초등학교 고학년 대상 생명존중 인식개선 교육 「사랑이 쑥쑥」(대면교육)		40분
7		온라인 초등학교(고학년) 생명존중 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 「사랑이 쑥쑥」(시청각교육)		25분
8		생명존중교육 ‘소중한 우리들 2.0’	시흥시자살예방센터 ☎ 031-316-6664	40분
9		생명사랑 꼬북케어	사회복지법인 생명의전화 ☎ 02-764-8783	80분
10		나눔 너눔 우리봄(1~6학년)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 070-7008-9894	40분
11		너는 특별하단다	이다라운지 ☎ 010-6803-0975	90분
12		초등학교 감정조절 자기이해(초감자) 교육 저학년용	울산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40분

No	교육대상	교육명	기관명	교육시간
13		초등학생 감정조절 자기이해(초감자) 교육 고학년용	☎ 052-288-0043	40분
14		I AM (초등저)	굿네이버스 ☎ 02-6424-1422	40분
15		I AM (초등고)		40분
16		생명우체국		40분
17		초등학교 5-6학년을 위한 생명존중교육 '친한친구' (1시간 버전)	제주특별자치도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 064-717-3032	40분
18		초등학교 5-6학년을 위한 생명존중교육 '친한친구' (2시간 버전)		80분
19	초등~ 고등	생명보듬이 기초교육 '무지개'	(사)생명문화 라이프호프 ☎ 02-2138-0807	45분
20	초등고~ 청년	지피지기 백전백승		90분
21	초등~ 성인	내 마음 돌보기	한마음한몸 자살예방센터 ☎ 02-727-2498	60분
22	중등	청소년 생명존중교육 'I MY ME MINE'	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 051-638-2662	45분
23		La La(라라)	사회복지법인 생명의전화 ☎ 02-764-8783	270분
24		마음보호훈련		90분
25	중고등	나.비효과(나와 너로부터 비롯된 효과) 중고등학교 ver.	완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 ☎ 063-262-3066	50분
26		나와 우리, 체크인	굿네이버스 ☎ 02-6424-1422	45분
27	중고등~ 성인	생명사랑을 위한 '마음에 온(ON)' 일반 2.0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 032-468-9917	20분
28	고등~ 노인	자살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프로그램 '나봄너봄함께봄'	한국자살예방협회 ☎ 02-413-0892	60분
29	청년	나.비효과(나와 너로부터 비롯된 효과) 성인(청년) ver.	완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 ☎ 063-262-3066	60분

No	교육대상	교육명	기관명	교육시간
30		나.비효과 자살예방교육 성인(청년) 온라인 ver.		26분
31	청년~ 중장년	생명을 지키는 한 걸음, 직장인을 위한 [자살예방 인식 개선 교육편]	(주)챔프스터디 ☎ 02-536-9670	60분
32		더 나은 내일로! - 직장인을 위한 자살예방 인식개선교육	주식회사 365평생교육원 ☎ 1522-3019	70분
33	중장년~ 노인	안녕해U?	광주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 062-233-0468	50분
34	성인	나.비효과 자살예방교육 성인(중장년) ver.	완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 ☎ 063-262-3066	60분
35		나.비효과 자살예방교육 성인(중장년) 온라인 ver.		20분
36	노인	나.비효과 자살예방교육 노인 ver.		60분
37		나.비효과 자살예방교육 노인 온라인 ver.		40분
38		생명사랑을 위한 ‘마음에 온(ON)’ 노년층 2.0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 032-468-9917	30분
39		백세 마음 두드림	울산광역시 정신건강복지센터	45분
40		백세 마음 두드림 온라인교육	☎ 052-283-0199	45분

- 생명지킴이 교육

No	교육대상	교육명	기관명	교육시간
1	초등	(초등학생) 안전한 테두리의 나- 안테나O-K	인천광역시교육청 ☎ 032-420-8494	40분
2	초등고~ 고등	청소년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양성 프로그램 “친구사이”	수원시자살예방센터 ☎ 031-247-3279	45분
3		청소년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양성교육 ‘WHAT’S UP’	화성시아동청소년 정신건강복지센터 ☎ 031-305-1010	60분
4		내 생명 소중하게	전북생명의전화 ☎ 063-286-9192	40분

No	교육대상	교육명	기관명	교육시간
5		마음 줌(zoom): 이론편	종로구정신건강복지센터 ☎ 02-745-0199	22분
6		생명이어달리기 청소년편	충청남도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 041-566-9184	60분
7		청소년용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생명배달”	충청북도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 043-217-0597	60분
8	중등	또래생명지킴이 훈련프로그램 “나! 우리학교 Gatekeeper야!”	구미정신건강복지센터 ☎ 054-444-0199	45분
9		생명사랑 토티교실 3.0 (중학교 1학년용)	경기도자살예방센터 ☎ 031-212-0437	100분
10	중고등	청소년기 정신건강의 이해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 063-451-0363	50분
11		생명사랑 토티교실 게이트키퍼ver.	경기도자살예방센터 ☎ 031-212-0437	50분
12		생명사랑 토티교실 자해예방ver.		50분
13		청소년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마인드프렌즈’	광주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 062-267-5510	50분
14		청소년 생명존중 「누군가에게 말해보세요」	대구학생자살예방센터 ☎ 053-326-9275	50분
15		STAY-생명지기 (A-생명지기)	서울시자살예방센터 ☎ 02-3458-1000	32분
16		청소년 생명존중교육 생명톡톡	대구광역시자살예방센터 ☎ 053-256-0199	50분
17		온라인 청소년 생명존중교육 「생명톡톡」		40분
18		(중·고등학생) 안전한 테두리의 나- 안테나O_K	인천광역시교육청 ☎ 032-420-8494	45분
19		생명이어달리기 온라인교육(청소년편)	충청남도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 041-566-9184	44분

No	교육대상	교육명	기관명	교육시간
20		생명의 나침반	굿네이버스 ☎ 02-6424-1422	45분
21	고등~ 노인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지킴이 양성 프로그램 '나눔너눔함께봄' - 기본	한국자살예방협회 ☎ 02-413-0892	60분
22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지킴이 양성 프로그램 '나눔너눔함께봄' - 심화		120분
23	청년	STAY-생명지킴이(Y-생명지킴이)	서울시자살예방센터 ☎ 02-3458-1000	40분
24		생명이어달리기 온라인교육(성인편)	충청남도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 041-566-9184	40분
25	청년~ 중장년	생명을 지키는 한 걸음, 직장인을 위한 [자살예방 생명 지킴이 교육편]	(주)챔프스터디 ☎ 02-536-9670	59분
26		온라인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양성 프로그램 「생명구조대」	대구광역자살예방센터 ☎ 053-256-0199	40분
27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양성 프로그램 「생명구조대」		50분
28		오늘부터 생명지킴이!: 서로의 마음을 밝히다 [사회복지기관 및 의료기관 편]	주식회사 이엔아이그룹 ☎ 070-4353-1970	73분
29		오늘부터 생명지킴이!: 서로의 마음을 밝히다 [일반 편]		65분
30	청년~ 노인	마음구조 SOS	대전광역자살예방센터 ☎ 042-486-0005	60분
31	중장년	경상남도 중장년층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4050 그대에게'	경상남도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 055-239-1400	60분
32		STAY-생명지킴이(S-생명지킴이)	서울시자살예방센터 ☎ 02-3458-1000	28분
33	성인	생명지구대	광주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 062-267-5510	60분

No	교육대상	교육명	기관명	교육시간
34		STAY-생명지키(S-생명지키) 기초용	서울시자살예방센터 ☎ 02-3458-1000	21분
35		자살예방 지킴이 훈련 (Gatekeeper Training) 프로그램		180분
36		서로를 살리는 관계학교		480분 (4회)
37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 061-350-1700	60분
38		전북특별자치도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소중한 숨'[기본형]	전북특별자치도 정신건강복지센터 ☎ 063-251-0650	180분
39		전북특별자치도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소중한 숨'[단축형]		60분
40		성소수자 자살예방지킴이 양성교육 무지개돌봄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 02-745-7942	180분
41		너의 도움이 필요해	한마음한몸 자살예방센터 ☎ 02-727-2498	60분
42		초록초록 생명존중 인식개선 캠페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 070-7008-9894	40분
43		동료 '생명지킴이' 교육	고용노동부 ☎ 044-202-7854	120분
44		노인자살예방교육	부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 ☎ 063-581-5830	40분
45		생명이어달리기 성인편	충청남도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 041-566-9184	60분
46	성인~ 노인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생명배달'	충청북도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 043-217-0597	60분

No	교육대상	교육명	기관명	교육시간
47	노인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이심전심'	수원시자살예방센터 ☎ 031-247-3279	60분
48		노인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프로그램 생명충전기	대구광역시자살예방센터 ☎ 053-256-0199	50분
49		온라인 노인 생명지킴이 양성 프로그램 「생명충전기」		30분
50		생명이여달리기 온라인교육(노인편)	충청남도광역시 정신건강복지센터	30분
51		생명이여달리기 노인편	☎ 041-566-9184	50분
52		노인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교육 '생명사랑특독65+'	제주특별자치도광역시 정신건강복지센터 ☎ 064-717-3000	50분
53	관련 종사자	전북특별자치도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소중한 숨' [청소년 전담인력용]	전북특별자치도 정신건강복지센터 ☎ 063-251-0650	80분
54		생명지킴이 양성교육(종사자형)	서울시자살예방센터 ☎ 02-3458-1000	60분
55		S-생명지기(다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미얀마어, 태국어, 네팔어)		22분
56		STAY-생명지기(T-생명지기)		18분
57		교사용 생명지킴이 양성 프로그램		120분
58		소방공무원 동료 게이트키퍼 훈련프로그램 '뽐!뽐!뽐!'	구미정신건강복지센터 ☎ 054-444-0199	120분
59		자살중재훈련 TA	마음두레(주) ☎ 041-406-7311	420분
60		군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국방부	60- 120분
61		해병대를 위한 보고듣고말하기	해병대사령부	120분
62		(교직원) 안전한 테두리의 나 - 안테나 O_K (기본과정)	인천광역시교육청 ☎ 032-420-8494	63분
63		(교직원) 안전한 테두리의 나 - 안테나 O_K (초등심화)		85분

No	교육대상	교육명	기관명	교육시간
64		(교직원) 안전한 테두리의 나 - 안테나 O_K (중등심화)		83분
65		[자살예방지킴이교육] 생명을 지키는 열쇠 - 요양보호사를 위한 CARE 기법	미래교육지원연구소 원격평생교육원 ☎ 1522-0313	65분
66		공군을 위한 보고듣고말하기	공군본부	110분
67		육군을 위한 보고듣고말하기	육군본부	120분
68		해군을 위한 보고듣고말하기	해군본부	120분
69		(교원) (자살예방) 손에 잡히는 학생자살예방교육	서울특별시교육청 ☎ 02-399-9025	108분
70		경찰동료 생명지킴이 교육프로그램 ① 전직원용	경찰청 ☎ 02-3150-0684	60분
71		경찰동료 생명지킴이 교육프로그램 ② 전직원용 온라인 교육		60분
72		경찰동료 생명지킴이 교육프로그램 ③ 관리자용		60분
73		경찰동료 생명지킴이 교육프로그램 ④ 관리자용 온라인 교육		60분
74		자살예방 생명지킴 양성 프로그램 '보고듣고말하기' (초·중등교사용)	교육부 ☎ 044-203-6206	60분
75		학생자살예방 인식개선 생명지킴이 교육		50분
76		생명 존중 케어 기법 레벨 업! -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생명지킴이교육	주식회사 365평생교육원 ☎ 1522-3019	90분

참고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시행규칙 별도 규정 없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 2025. 11. 11.] [법률 제21113호, 2025. 11. 11. 일부개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17조(자살예방 상담·교육)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자살예방 교육의 실시 결과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2.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4.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제10조(자살예방 상담·교육 실시기관) ①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 및 제76조제1항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5. 그 밖에 자살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②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말한다.
②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자살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및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 2.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3. 그 밖에 자살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③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른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살위험자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119구조대의 구조대원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2.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3.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5. 그 밖에 자살예방 상담·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④ 법 제17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돌봄사업 종사자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 및 같은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통합사례관리사 3.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종사자 4. 「치매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종사자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 유족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자살예방 상담·교육에 필요	

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교육, 방법 및 내용, 자살예방 교육의 실시 횟수 및 결과 제출 절차와 제5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자살예방 상담·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살예방 교육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살예방 인식개선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 나. 자기 이해와 돌봄, 도움 요청에 관한 내용 다. 그 밖에 생명존중에 대한 건전한 가치함양에 필요한 내용 2. 생명지킴이 교육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자살문제와 현황 나. 자살위험요인과 자살경고신호 다. 자살위기 대응 기술 라. 그 밖에 자살위기 방지 및 대응에 필요한 내용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과 연계·통합하여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살예방 교육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자살예방 교육: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의 방법. 다만, 자살예방 교육의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살예방교육 우수 기관·단체·시설의 장은 다음 연도의 교육을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기관·단체·시설 내에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2. 자살예방 상담: 전화상담, 인터넷을 이용한 상담 또는 개별면담의 방법
	④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자살예방 교육의 실시 결과를 제출하려는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다

	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교육 결과를 제출받은 주무부처의 장은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10조의3(자살예방 상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①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자살예방 상담·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이하 이 조에서 “상담·교육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 따른 기관·단체 및 시설과 같은 조 제4항의 사람이 소속된 기관·단체 및 시설에 보급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및 시설에 제1항에 따른 상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의4에 따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자살예방 상담·교육에 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 및 시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상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상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장려하기 위하여 우수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6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 교육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살예방 교육의 실시 횟수에 관한 경과조치) 2024년 1월 1일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종전의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한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제1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2024년도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2026년

**자살예방교육
안내서**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KOREA FOUNDATION FOR SUICIDE PREVENTION